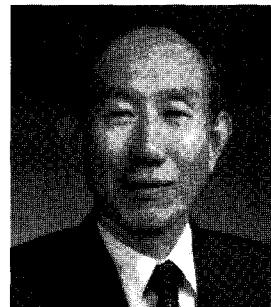


## PL법 시행과 파렛트 관리

2002년 7월 1일부터 PL법(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파렛트업계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요구된다.

<편집자 주>



한국물류협회물류연구원  
원장 전만술

### 1. PL법(제조물 책임법)의 개요

#### (1) PL법의 개념

소비자 또는 상품의 이용자가 해당상품으로 인해 신체, 생명, 재산의 안전을 손해당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여 제조업자의 안전확보 노력을 촉구하는 제도를 PL(Product Liability) 제도라고 말하며 이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PL법이다.

이제도의 시행은 소비자 또는 상품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 생명,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현행법상(주로 민법 관련조문) 보상을 받기 위하여 제작회사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PL법(민법중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입증 책임이 없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된다.

#### (2) PL법의 제정경위와 목적

PL법(제조물 책임법)은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한 결합제조물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정부에 이송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법제1조)

## 2. 외국의 PL법 시행현황

전 세계적으로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30여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모두 시행중이고 개도국 가운데서도 중국, 필리핀 등이 채택하고 있다.

EU, 미국등 선진국들이 PL법을 시행함에 따라 PL법이 없는 국가들은 대외무역에서 공정을 기할수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수출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WTO 체제에 따라 타국의 저질 상품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간접적 제어 수단도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PL법 제정과 시행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 (1) EU의 PL지침시행

EU는 PL 지침을 마련하여 1985년에 가맹국에 시달하였다. 이 지침의 정식명칭은 결합 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등에 관한 각료 이사회 지령이다. 이 지령은 모든 가맹국에 대해 3년 후를 기한으로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률제정을 의무화시키려는 것이다.

유럽 각국은 미국과 같이 철저한 소송사회는 아니므로 EU의 PL 소송사례는 대륙법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기업에 크게 참고가 될것으로 보인다. EU 각국에서는 PL지침이 제정된 후에도 소비자가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업 도산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제조업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도 상품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제조업자(파렛트 제작업체)는 EU각국의 기업행동을 주목해야 할것이다.

### (2) 미국의 PL법 시행

미국에서는 지난 1964년 이 제도가 도입된후 80년대말 부터는 연간 소송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2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송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변호사 제도에다 배심원들이 피해자에게 동정적으로 판결을 내려 제조업자에게 너무 심한 부담을 주는 경향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결과 제조업자 중에는 손해보험을 거절 당하고 위험을 회피하지 못하여 공장을 폐쇄하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재판을 보다 업격하게 운용함으로써 소송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 (3) 일본의 PL법 시행

일본에서는 1994년 6월에 PL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년간의 주지기간을 거쳐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체계를 지니고 있는 일본은 EU의 PL지침 시행에서와 같이 변호사 접근이 쉽지 않고 사전화해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소송건수가 미국처럼 그리 많지는 않고 악용사례도는 적은 실정이다.

### 3. PL법 적용의 특징

#### (1)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할때는 민법 제750조(불법 행위 책임)이라는 규정에 근거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업자측의 설계, 개발, 제조단계등에 어떻게 과실이 발생되어 결함물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피해자 자신이 면밀히 조사 한후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측에 대해 제조업자측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PL법에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제소하는데는 그 제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되었다. PL법이란 민법중 특별법으로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제소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제품결함에 보상해주어야하는 강도 높은 손해배상 책임법이다.

#### (2) 제품사용자(소비자)제일주의를 규정한 법률

PL법은 제품사용의 피해자가 입증해야할 책임부담이 경감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과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결함에 대한 입증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된점이다.

과실이란 제조업자의 부주위 또는 실수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사실상 제조과정 어디에 과실이 있는가를 피해자가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파렛트 제품의 경우재질이나 부속품이 미흡한것인지, 작업방법이나 결합상태가 잘못된것인지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이를 규명해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해 결함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한다. 재질이나 공정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는 모르더라도 결과적으로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비교적 쉽게 알수 있다. PL법에서는 이를 증명하면 되는 셈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어졌고 다만 제품의 결함을 밝히기만 하면 되었다.

#### (3) 제품안전성 향상을 규정한 법률

제품의 안전성 관리는 제조사 성능품질만이 아니라 안전품질을 도모해야하며 또한 사용

시에 안전을 위하여 제품상에 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와 올바른 사용법을 부착 또는 별도로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였다하더라도 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PL소송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 관리를 함으로써 업체 전체의 안전의식을 높힐 수가 있어 결함 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주릴 수가 있다.

특히 PL법 시행은 안전기준이나 범위를 제조물 책임설정에 알맞은 형태로 정비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안전기준이나 범위는 제품과 사용방법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시대 요청에 부응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보완해나가야 한다.

#### 4. PL법과 파렛트 제품규정

PL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에 따르면 파렛트 제품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해당되고 있다.

여기서 제조라함은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원재료에 공정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이다. 가공이라함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이것에 공작을 더하여 그 본질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다면 플라스틱 파렛트는 제조에 해당되며 목재 파렛트와 철재 파렛트는 가공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파렛트는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민법 제 99조)이 아니면서 관리할 수 있는 유체 물(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존재)인 동산에 해당한다.

#### 5. PL법과 파렛트 제조업자

PL법 제 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파렛트 관련 업체는 거의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제2항 "가"는 원재료 부품 및 완성품의 제조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렛트를 실제로 제작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파렛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원부자재의 제조업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다.

제2항 "나"는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등을 부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는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직접 파렛트를 제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조업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다.

제2항 "다"는 판매나 대여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유통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유입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파렛트 판매업체 또는 대여 업체등이 제조업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다.

제2항 "라"는 제조물을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와 제조물의 결함이 그 공급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거나 또는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업자를 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렛트 사용업체등도 제조업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6. PL법과 파렛트 관리

만약 파렛트를 사용하는 유통회사의 상품매장에서 고객이 파렛트가 훼손되어 상품이 무너져 신체 상해를 당했다고 가정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것인가. 우선 신체상해를 당한 고객은 1차적으로 유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상할수 있다.

이때 유통회사는 원인제공을 한 파렛트의 파손이 사용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파렛트 제작회사의 제작 잘못으로 인한 품질의 저하에서 온것인지를 판단하여 파렛트 제작회사의 제품 결함에 원인이 있다면 제 2의 소송이 제기 될 수 있다고 가상할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의 쟁점에서 파렛트의 품질과 올바른 사용 방법의 고지가 있었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다.

결국 파렛트 제품이 PL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파렛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렛트 관리를 위해서는 PL법 제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을 방지해야 한다.

### (1) 제조상의 결함 방지

파렛트가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 가공제작된 경우를 말하며 플라스틱 파렛트 제작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복재 파렛트 가공에서 부속품이 빠지거나 잘못 결합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제조(제작)상의 결함을 방지 해야한다.

### (2) 설계상의 결함 방지

파렛트제품이 설계도면대로 제작되었지만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만약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렛트의 재질, 제작기술, 사용환경변화에 따라 부단히 파렛트의 제조설계를 안전지향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한다.

### (3) 표시상의 결함방지-올바른 사용방법의 고지

파렛트 제작업체가 파렛트에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나 별도로 고지하였더라면 당해 파렛트에 의하여 발생될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이 파렛트 자체의 결함이라고 한다면 표시상의 결함은 파렛트 자체가 아닌 결함이다.

파렛트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파렛트에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파렛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된다. 이것은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방법 지시 경고 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 (4) 기타 결함방지

PL법에서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이외에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여 포괄적으로 결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포괄적 결함의 예로서는 KS규격(시험 강도등)에 미달하는 파렛트를 저가로 구입하여 사용한다든가, 손상된 파렛트를 보수 또는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므로서 발생되는 결함등을 들수가 있다.

### 7. PL법 시행과 파렛트 업계의 대책

파렛트 제품이 PL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법 제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을 방지하도록 파렛트의 제작업체(공급업체), 판매 및 임대업체, 그리고 사용업체(소비자)들이 각자 자신과 관련있는 업무 범위에서 파렛트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 (1) 파렛트의 제작업체

파렛트의 제작업체는 PL법상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결함책임을 갖게 된다. 즉, 파렛트 제품에 대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사용방법의 고지 결함)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여기서 제조상의 결함은 파렛트를 KS 규격대로 제작하면 대부분 사전에 방지될 수가 있다. 한편 KS 규격도 기술수준과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ISO 규격에 맞도록 신규제정, 개정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파렛트의 현행 KS규격중 구조 품질규격, 검사규격, 손상보수규격 등 여러 가지규격들이 ISO규격에 비교하여 볼 때 국내외 PL법에서 제품결함을 발생시킬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KS규격을 PL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

파렛트의 설계상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렛트를 단순히 성능품질설계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안전품질설계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설계기법을 개발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렛트기술연구소를 개별업체보다는 파렛트 업계의 단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면에서 유리할수 있다고 본다.

## (2) 파렛트의 판매 및 임대 업체

파렛트의 판매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파렛트는 저가 구매에만 집착하지 말고 수명, 성능, 안전 등을 고려하여 KS제품인 품질위주로 구매하여야 한다.

파렛트의 결함이 발생될시에는 PL법에서는 판매 및 임대업체도 보충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PL법 제 3조 2항(판매나 대여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유입한 자)으로 해석해볼 때 파렛트의 제작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 파렛트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파렛트의 결함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보충적 책임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파렛트의 판매 및 임대업체에게 보충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배상 의무자이어야 할 파렛트 제작업자가 피해자에게 불투명한 경우에는 판매 및 임대업체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 배상의무자를 명확하게 해두자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파렛트의 판매 및 임대업체는 파렛트를 구입할시 반드시 파렛트의 제작업체 또는 공급업체 및 구입파렛트를 명확히 파악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명기해 두어야 한다.

## (3) 파렛트의 사용업체

파렛트의 사용업체는 저가구매를 목적으로 KS규격에 미달하는 저질수준의 파렛트를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당장 저가구매가 투자비 면에서 유리하다 하더라도 사용상에 결함이 생기면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KS규격에 맞는 파렛트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파렛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생산, 물류 부문의 관계자에 대하여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법"을 철저히 주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파렛트 사용자들에게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법"을 보급하고 파렛트 제작업체는 자사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PL법에 의한 파렛트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책임인지, 제작자의 책임인지를 판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이며 더 큰 의미는 파렛트 제작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각 관련업체들은 자기 특성에 맞도록 파렛트를 관리하면서, 만약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파렛트가 있다면 신속한 리콜제도를 통하여 회수하도록 하며 손해배상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L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 **8.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법 홍보 강화와 표준품질 인증제도 도입**

### **(1)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법 홍보 강화**

파렛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PL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렛트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능품질관리 못지 않게 사용안전관리가 중요하다.

파렛트 사용자(유통업체, 물류업체, 제조업체, 임대업체 등)들은 반드시 KS규격의 표준파렛트를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렛트는 자체중량 뿐만 아니라 적재중량 때문에 잘못 취급하게 되면 적재물손상, 파렛트파손, 인명재해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파렛트의 취급규정을 제정하여 꾸준한 교육과 계몽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한국파렛트협회는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법"을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파렛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홍보활동을 꾸준히 펴고 있다.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법은 목재와 플라스틱의 재질별로 경고사항, 주의사항, 요망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작성해 놓았다.

이러한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법은 파렛트가 물류활동의 주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파렛트 업계는 물론이거나 정부관련부처,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교육기관 등 법국가적차원에서 물류안전 교육과정으로 철저히 다루어져야만 PL법의 결함책임에 저촉되지 않고 파렛트 사용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수가 있다.

### **(2) 파렛트의 표준품질인증제도 도입**

파렛트 제조업계는 가격경쟁을 위한 일환으로 저급 원부자재의 사용과 기술수준이 낮은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 KS품질규격의 적용이 활발하지 못하여 결국 저급품질의 파렛트를 생산하므로서 나아가서 표준 품질파렛트의 보급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파렛트의 품질수준을 적정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KS규격 표준파렛트를 생산하여 규격(치수), 형태 표준화 뿐만 아니라 품질표준화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파렛트의 품질표준화 방법의 일환으로 파렛트 제조업 단체차원에서 KS 규격을 고려한 품질기준을 제정하여 균일한 품질, 규격보장, 생산자동화가 되도록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강구한다.

특히, 일관파렛화의 대상이 되는 T-11형 표준파렛트를 생산함으로써 규격뿐만 아니라 중량, 성능 등을 표준화하여 파렛트의 파손을 억제하고 안전도를 높혀 수명을 연장시키고, 적재품목의 손상방지를 할 수가 있다.

PL법상 파렛트의 결함책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KS표준파렛트의 생산을 확대시키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품질표준 인증서를 발행하고 해당 파렛트에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이를 근거로 조세 감면, 금융지원 등을 통하여 파렛트의 품질수준을 제고시키도록 해야 한다.